

[별표 12]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1.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147조관련)

| 구 분 | 종별 및 재질 | 재활용기준비용 |
|--|---|----------------------|
| 1. 제146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 가. 종이팩 | kg당 185원 |
| | 나. 유리병 | kg당 34원 |
| |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 kg당 87원 kg당 151원 |
| |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발포폴리프로필렌(EPP)·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 kg당 317원 kg당 981원 |
| |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 kg당 178원 |
| |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 kg당 235원 kg당 360원 |
| | 나) 단일재질 유색 | kg당 327원 |
| | 다) 복합재질 | kg당 467원 |
| | 4)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 kg당 467원 |
| | 5)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 |
| 6) 1)부터 5)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 | |
| 2. 제146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 가.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 kg당 317원 kg당 467원 |
| 3. 제146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및 같은 조 제 3호의2에 따른 제품 | 단일·복합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재질 [폴리염화 비닐(PVC)은 제외한다] 필름류 | kg당 467원 |
| 4. 제146조제4호에 따른 제품 | 가. 수은전지 | g당 39.6원 |
| | 나. 산화은전지 | g당 35.5원 |
| | 다. 니켈카드뮴전지 | g당 0.78원 |
| |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 g당 0.8원 |
| |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 g당 0.35원 |
| | 바. 니켈수소전지 | g당 0.16원 |
| 5. 제146조제5호에 따른 제품 | 타이어 | kg당 30원 |
| 6. 제146조제6호에 따른 제품 | 윤활유 | ℓ당 20원 |
| 7. 제146조제7호에 따른 제품 | 가. 형광등 | 개당 143원 |
| | 나. 발광다이오드 조명 1) 전구형(電球形) | kg당 1,100원 |
| | 2) 직관형(直管形) | kg당 900원 |
| | 3) 평판형(平板形) | kg당 600원 |
| 8. 제146조제8호에 따른 제품 | 수산물 양식용 부자 | kg당 627원 |
| 9. 제146조제9호에 따른 제품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kg당 527원 |
| 10. 제146조제10호에 따른 제품 |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 kg당 545원 |

| 큰 제품 | | |
|----------------------|---|-----------------------------------|
| 11. 제146조제11호에 따른 제품 | 가. 산업용 필름 | kg당 527원 |
| |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 kg당 404원 |
| | 다. 안전망 | kg당 545원 |
| | 라. 어망 | kg당 545원 |
| | 마. 로프 | kg당 545원 |
| | 바. 폴리에틸렌 관 | kg당 527원 |
| |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 kg당 527원 |
| |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kg당 327원 |
| | 자. 파렛트 | kg당 427원 |
| |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 kg당 427원 |
| | 카. 창틀·문틀 | kg당 607원 |
| | 타. 바닥재 | kg당 607원 |
| | 파. 건축용 단열재 | kg당 645원 |
| | 하. 전력·통신선 | kg당 685원 |
|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kg당 527원 | |
| 12. 전자제품 | 가. 대형기기(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 kg당 274원 |
| | 나. 통신·사무기기(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 kg당 433원 (이동전화단말기는 kg당 2,717원) |
| | 다. 중형기기(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 kg당 424원 |
| | 라. 소형기기(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 kg당 580원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비 고

1~3. (현행과 같음)

4. 제6호의 윤활유는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만 해당한다.
5. 위 표에서 “복합재질“이란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첩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제12호의 제품별 세부 정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별표3의 대상 제품 범위에 따른다.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관련)

| 품목 구분 | 중별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기준 |
|---------------|---------------------------|------------|
| 1. 살충제, 유독물제품 |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 이하 | 개당 24.9원 |

| | | |
|-----------|---|--|
| | (2) 500mL 초과 나. 유리병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다. 금속캔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
| 2. 부동액 | 부동액 | ℓ 당 189.8원 |
| 3. 껌 | 껌 |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
| 4. 1회용기저귀 | 1회용기저귀 | 개당 5.5원 |
| 5. 담배 |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
| 6. 플라스틱제품 |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

※ 비고 :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7호관련)

| 업종의 구분 |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
|--------------------------------------|--|
|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
| |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
|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기록매체 복제업(C182) |
|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
|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
|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가. 반도체 제조업(C261) |
| |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
| |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
| |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
| |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
| |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
| |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
| |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
| |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
| 9. 전기장비 제조업(C28) |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
| |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 | |
|-------------------------|-----------------------------|
| |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
| |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 |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 |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 |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
|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 |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
| |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
| |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 13. 가구 제조업(C32) | 가구 제조업(C320) |
|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
| | 나. 악기 제조업(C332) |
| | 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
| |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
| |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비고 :

1. 업종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것을 말하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괄호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